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책임작성 | 김희선 연구위원(02-707-9824, kimhs@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국내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관련 법령 현황
3. 현행법상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가능성 진단
4.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모색

| 요약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문제는 산업기반 유지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
- 중소기업들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가 곤란
- 기존 제도의 틀 하에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관련 제도개선은 비교적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 선진국의 경우 공인법인에의 지분 출연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와 기업승계의 이익을 누리는 방식 그리고 종류주식 발행을 통한 지분희석 방지 장치가 활발하게 활용됨으로써 기업승계 촉진에 기여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 회피와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들이 존재
-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 공익법인 주식출연 관련 규제 완화
 - 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
 -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소기업 승계에 활용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익사업에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상속·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의 요건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의무배당성향 유지요건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 의무지출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며, 매년 공익법인 재산과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가령 50%)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
- 현행 법 상 도입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활용도 제고
 - 기업승계 목적으로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발행한 것을 입증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법」 상의 발행허용 한도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
 -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

1. 서론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문제는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흑자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매각하거나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
-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1997년부터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기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¹⁾
 - 동 제도들이 기업승계가 아닌 가계의 가업(家業) 승계 관점에서 설계된 측면이 있고, 부의 이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이용자 편의적으로 설계·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승계문제를 가업(家業)승계가 아닌 기업(企業)승계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의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기업승계는 승계의 대상이 자식이나 친인척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개선과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핵심적인 과제임
 -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여 기업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경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업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식매각이 이뤄짐으로써 승계 이후에 후계 경영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

1)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84건, 공제금액은 2,365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에서 연평균 1만 3,169건, 공제금액 276억 유로(한화 약 37.8조 원)에 달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적(김희선, 2020)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선진국의 경우 공인법인으로의 기업 지분 출연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와 기업승계의 이익을 누리는 방식과 함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 발행을 통한 지분희석 방지 장치가 활발하게 활용됨으로써 기업들의 기업승계 촉진에 기여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 회피와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들이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공익 법인 및 종류주식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확인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2. 국내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관련 법령 현황

1) 공익법인

-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²⁾

〈표 1〉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2)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개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한정하여 기술함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어 세부담을 면제받는 혜택이 존재함³⁾

〈표 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구분	내용
공익사업의 수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
출연재산	- 출연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가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채권 포함)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생전 증여계약 및 공익법인의 설립, 유증 또는 사인증여계약에 의해 출연하게 되며, 이때의 유증은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의한 것 -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함
상속인 출연 시 공익법인 지배권한 배제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 불가 -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권한 보유 금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내용을 참고해 정리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이 부여됨

〈표 3〉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관련규정	세제혜택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비과세 및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법인세법」 제113조)	- 고유목적사업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함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 경리해야 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 - 준비금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조정 허용(「법인세법」 제61조)
일정 기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3조 제3항)	- 3년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자료: 「법인세법」 내용을 참고해 정리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 반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일정비율 이상 출연할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세 부담이 발생함
 - 이 규정은 (구)「상속세법」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될 당시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경영권의 우회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대주주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경영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

〈표 4〉 공익법인 주식 출연, 취득 시 지분을 한도 및 의무위반 시 제재

구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위반시 제재		
출연 취득	출연 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 지분을	일반공익법인		5%	초과분 상증세 부과	
		성실 공익 법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과 특수관계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10% 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 받음		한도없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한도없음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일반 공익 법인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 보유분 가산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이행	5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한도없음			

자료: 국세청(2020) p.138 참고해 정리

- 공익법인이 출연자산 등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도 존재함

〈표 5〉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구분	사후관리 규정	미이행 시 제재
공익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산 매각금액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 사용액에 가산세(10%) 부과,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차 공익목적사업 미사용분은 증여세 과세

구분	사후관리 규정	미이행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목적사업 외 사용분은 증여세 과세, 사용 기준금액 미달분은 가산세 부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실공익법인 등이 동일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또는 지분율 10% 초과 시 3%)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달사용분은 가산세 부과(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 잔여재산 중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부과
출연자의 사적지배 방지 및 계열회사 지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5%, 10% 또는 20%) 이하 취득 및 보유 	-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가액을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또는 50%) 초과 보유 	- 가산세 부과(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사(1/5 초과) 및 임직원 취임제한 	-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기업의 광고 등 금지 	- 관련 비용에 대해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내부거래 금지 	-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투명성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수감의무 	-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등 회계기준 적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대상거래에 대해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의무 	- 작성·보관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 법인세 징수	

자료: 국세청(2020), 기획재정부(2020) 내용 참고해 정리

2) 종류주식

-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해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함
 - 「상법」에서는 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②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③ 상환주식, ④ 전환주식 그리고 ⑤ 이들을 혼합하여 발행된 주식(상환전환 우선주)의 5가지 유형을 제시⁴⁾
 - 이 중 ‘의결권 배제·제한주식’과 ‘상환주식’은 기업승계에 활용 가능
- 「상법」에서는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해야한다”고 규정⁵⁾
 -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은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완전무의결권주식’, 일부의 결의사항에 한해 의결권이 없는 ‘일부 무의결권주식’, 일부의 결의사항에 의결권이 있는 ‘일부의결권주식’ 등이 존재
 -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며, 만일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⁶⁾
 - 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초과 발행된 부분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주를 더 발행하는 방법 등이 존재⁷⁾
- 상환주식은 「상법」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상환사유부주식’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상환청구권부주식’으로 구분⁸⁾
 - “상환의 대가는 현금 이외에도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⁹⁾

4) 「상법」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5)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6) 상장회사의 경우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제2항)

7) 권중호(2013) p.61 참고

8) 「상법」 제344조 제1항, 제345조 제3항

9) 「상법」 제345조 제4항

- 참고로 상환주식은 2011년까지는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만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상환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에는 우선주 외의 종류주식도 상환이 가능
- 발행된 주식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는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법이 존재

3. 현행법상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가능성 진단

1) 공익법인

-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선대 경영자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별도의 법인을 출자·설립하고, 동 법인이 출자 및 지배권 행사를 통해 승계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
-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독일이나 미국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 확인 가능함
 - 독일의 경우는 경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거나 신탁에 위탁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의 일정부분(최대 1/3)까지 출연자 및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로도 지급 가능¹⁰⁾
 - 독일의 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격을 갖는 재단, 신탁재단, 유한회사 형태를 갖는 재단, 조합 성격 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재단이 있으며,¹¹⁾ 이 중 민법상 법인격을 갖는 재단(rchtsfähige Stiftung bürgerlichen Rechts)이 일반적
 - 미국의 경우 면세단체로 인정받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경우¹²⁾ 법인세, 유산세 등 면세혜택과 기부금 공제혜택이 존재하지만, 가산세 제도로 인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민간재단에 맡겨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민간재단 투자소득에 대한 일정 분배요건을 달성하지 않을 경우, 민간재단과 특수관계인 간에 사적거래가 있는 경우, 민간재단이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가산세를 부과

10) 독일의 경우 이중재단방식(공익재단과 가족재단이 회사의 출자자로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기업승계도 존재함. 이 경우 공익재단이 통상 승계대상 회사의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지만, 동 자본회사의 의결권은 아주 낮게 소유하며, 동 자본회사의 이익에 대한 수익권은 공익재단과 가족재단이 나누어 소유함. 기업승계시 공익재단에 승계되는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가 면제되며, 기부금 관련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가족재단에 승계대상 자본회사의 일부만 귀속시킴으로써 상속세를 부분적으로 경감할 수도 있음(조병선, 2015).

11) 독일에는 2018년 기준 20,700개의 재단이 존재

12) IRC § 501(c)(3)

-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이 허용되고 있어, 공익법인에게는 보통주 혹은 무의결권주식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민간재단을 활용
- 해외 주요국들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를 최소 20% 이상 인정하고 있으며 보유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함
 - 미국은 민간재단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주식(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포함) 20%, 제3자가 기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5%의 보유한도를 규정
 - 캐나다는 민간재단에 기부된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주식보유제한제도에서 안전 조항을 도입하여 2% 초과 보유 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20%를 초과 보유 시에는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
 - 일본은 운용재산을 공익법인이 관리 운용하는 경우와 공익법인에 기본재산으로 기부된 경우에 한하여 50% 지분율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
 - 영국, 호주, 대만, 독일 등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

〈표 6〉 해외 주요국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 상한 규정 비교

구분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 상한 비율	추가 조항
한국	일반공익법인 5%, 성실공익법인 10%, 20%	계열사 출자는 해당 공익법인 자신의 30%까지 인정
미국	의결권 있는 주식 포함할 경우 20% 제3자 이미 지배력 보유시 35%	제3자가 기업 지배력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한도 35%까지 상향
일본	50%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 공시의무
캐나다	20%	2% 초과 시 국세청 신고의무
영국	없음	없음
호주	없음	없음

자료 : 김미애(2016) p.11 참고하여 정리

-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탈법적,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주식 출연 관련 규제가 과도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일반공익법인), 10%(성실공익법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 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매각 시에는 매각자금을 3년 이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도 존재
- 현금 출연과 무의결권주식 출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실행하기 곤란함¹³⁾
-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지분의 매각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무의결권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¹⁴⁾ 나머지 지분율에 대한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출연해야하므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음
 - 게다가 무의결권주식만을 출연할 경우에는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
 -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통제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의결권주식만을 출연할 수 있다면 기업승계 목적에는 의미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함
-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5~10%를 초과해서 출연할 경우 세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현금출연과 무의결권 주식 출연하는 경우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2) 종류주식

- 경영권이 원활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후계자가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여 의결권을 확보해야 가능함
- 하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여 지분이 희석됨으로써 의결권 확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13) 김중근·전병욱(2009)의 내용 참고

14) 「상법」 제344조의3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민법」 상의 유류분제도 때문에 특정한 후계자에게 지분을 집중시키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
- 우리나라 「상법」 상 의결권 배제·제한주식과 상환주식이 활용이 가능하나, 기업승계 목적으로의 활용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 기업승계와 관련해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활용코자 할 경우 상속 전에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발행하고, 후계자에게 보통주 그리고 비후계자 상속인에게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승계하는 방식을 활용 가능
 -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유류분을 고려한 비율에 따라 사후에 후계자에게 완전의결권 주식으로 상속하고, 이외의 상속인에게는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 없이 후계자에게 승계가 가능
 - 다만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승계에 참여하는 경영자들이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
- 그런데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발행이 현행법 상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4로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동 주식의 발행을 통해 주식배정을 불균등하게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저촉되어 과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이 외에도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취득하는 비후계자들은 의결권 축소 및 상실로 인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후계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비후계자에게 의결권 등에서 완전한 보통주 형태로 상환주식을 배정한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환권을 행사해 해당 주식을 매입 또는 소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상환이 실질적으로 곤란할 가능성도 존재
 - 「상법」 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현금 외에도 유가증권 등 여타 자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금 이외 자산의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¹⁵⁾

15) 김순석(2013)과 권종호(2011) 내용 참고

- 상환주식은 현행 「상법」에서는 자본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환주식 발행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4.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모색

-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대폭적인 변화를 단기에 기대하기가 곤란한 상황
- 따라서 기존 제도의 틀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 중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제도 개선은 비교적 단기에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1) 중소기업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규제 완화

-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보유한도 요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승계 목적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함
 - 미국, 캐나다, 일본은 공익재단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를 각각 20%, 20%, 50%까지 인정하고 있는데다, 기업승계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도 다양
 - 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세가 부과
 -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회사법상 거의 부재한 지금의 기업환경 속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승계 기업의 간접적 지배까지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영속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초래

- 중소기업들이 공익법인을 기업승계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허용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함
 -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중소기업 승계에 활용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해당 주식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충분히 공익사업에 투입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음
- 이에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익사업에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승계 대상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그 재산이 공적 영역에 편입되어 향후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출연된 주식에서 창출되는 배당수익이 공익사업 자금으로 유입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
 - 보취재단, 발렌베리재단 등의 사례를 보면 재산출연의 초기 목적은 상속세의 회피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창출한 부를 통해 많은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피한 상속세보다 큰 공익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배당수익의 공익사업 일정부분 이상 투입의무와 투명한 공익법인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를 현행 일반공익법인 5%에서 20% 이상까지 높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의 대가로 일정수준 이상의 의무배당성향 유지요건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 의무지출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면제한도 증가 요건으로 사후적으로 동 주식에서 창출되는 배당수익률을 제고하여 공익법인에 투입되는 배당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그 투입재원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다만, 어느 정도의 배당성향 또는 자산의 투자수익의 어느 정도 비율을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상황과 기업의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며, 매년 공익법인 재산과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가령 50%)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함

3) 현행법 상 도입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승계에의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의 발행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기업승계가 이루어졌고, 기업승계 목적으로 동 주식을 발행한 것을 입증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법」 상의 발행허용 한도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
 - 이 때 관련 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저축 가능성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려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현금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상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업승계 목적이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감안한 상태에서) 교부가능 자산 가액을 배당가능이익의 일정 배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참고자료

국세청(2020), 「공익법인 세무안내」.

권종호(2013), 「종류주식으로서의 보통주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지.

기획재정부(2020),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7.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김미애(2016),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 및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KERI Brief 16-25, 한국경제연구원.

김순석(2013),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제의 개선방안: 종류주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 pp.239-272.

김종근·전병욱(2012),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9권 제3호, pp.109-137.

김희선(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20-23, 중소기업연구원.

조병선(2015), 「독일의 기업재단과 가족기업 가업승계」, 중견기업연구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이동주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